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057
----------	------

제출년월일 : 2018. 4.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폐지이유

저소득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유사 목적 사업과의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현행조례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20. ~ 3. 1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대상 아님

4) 부패영향평가 : 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통단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마을"이라 한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대상) ①용자대상은 대구광역시 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구·군을 우선 선정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제3조(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은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하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업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용자금의 이율) 용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용자금 대부기간)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구청장·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시지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제7조(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용자금의 조성 및 용도) 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②이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용자금으로 지출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제9조(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 용자특례) ①농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 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광역시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 지원 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② 우수 농고생에게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생당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752호)"에 의한다.

제10조(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특별지원용자특례) ①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을 용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4. 3. 31 조례 제1796호]

제11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시지부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폐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상 희